

■ 사후보고약관접수및처리업무에관한규정 [별지 제6호서식] (신구)조문대비표 양식 <신 설>

## 약관 사후보고 (개정) (신구)조문 대비표

| 구분<br>(약관(상품)명) | 변경 전 <sup>1)</sup>  | 변경 후 <sup>2)</sup>   | (개정)사유 <sup>3)</sup>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동차 운용리스<br>약정서 | <p>연대보증인 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※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(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)의 130%입니다. (단 자동차 구입 시 100%)</li> </ul>           | <p>연대보증인 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※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(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)의 100%입니다. (삭제)</li> </ul> |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<br>변경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 한 자 / 영업목적 차량 구입</li> <li>- 보증종류 : 특정근보증 / 한정근보증 (단,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 시 100%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삭제</li> <li>-보증종류 : 특정근보증 / 한정근보증 (삭제)</li> </ul>  | 현재 보증 입보 하고 있지 않아<br>삭제, 관련 규정 없어 삭제 |
|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: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, 제5호에 해당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: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·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 사유에 따라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<br>(약관(상품)명) | 변경 전 <sup>1)</sup>  | 변경 후 <sup>2)</sup>   | (개정)사유 <sup>3)</sup>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동차 금융리스<br>약정서 | <p>연대보증인 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※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(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)의 130%입니다. (단 자동차 구입 시 100%)</li> </ul>         | <p>연대보증인 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※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 (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)의 100%입니다. (삭제)</li> </ul> |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변경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 한 자 / 영업목적 차량 구입</li> <li>-보증종류 : 특정근보증 / 한정근보증 (단,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 시 100%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삭제</li> <li>-보증종류 : 특정근보증 / 한정근보증 (삭제)</li> </ul>  | 현재 보증 입보 하고 있지 않아 삭제, 관련 규정 없어 삭제 |
|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: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, 제5호에 해당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타 :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·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보완 사유에 따라 변경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<br>(약관(상품)명) | 변경 전 <sup>1)</sup>   | 변경 후 <sup>2)</sup>  | (개정)사유 <sup>3)</sup>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할부 약정서          | <p>-※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%입니다.</p> <p>-※ 보증채무 최고액 : 할부 원금의 130%</p>   | <p>-※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00%입니다.</p> <p>-※ 보증채무 최고액 : 할부 원금의 100%</p>      | 계약자와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최고액 변경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<p>-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<br/>한 자 / 영업목적 차량 구입</p> <p>-보증종류 : 특정근보증 / 한정근보증<br/>(단,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<br/>시 100%)</p> | <p><b>-삭제</b></p> <p>-보증종류 : 특정근보증 / 한정근보증 (<b>삭제</b>)</p>                | 현재 보증 입보 하고 있지 않아 삭제, 관련 규정 없어 삭제 |
|                 | <p>- 기타 :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<br/>제2항 제4호, 제5호에 해당</p>   | <p><b>- 기타 :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·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</b></p> | 보완 사유에 따라 변경                      |